

◆머느리권씨 열전 28

속의 권씨(권중비 추밀공파 19세, 권완의 딸), 단종대왕의 후궁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단종 이야기의 부활



단종의 스토리 단골 사극 소재이지만 그 이면 숨겨진 세여인의 이야기. 그중 속의 권씨는 태종의 의빈 권씨, 단종의 모친 현덕 왕후 권씨등 가슴시린 사연이 있다. 본 기자의 집사람이 단종제의 음역을 주재한 기억도 새로운 그런 장면이다. 사진 네이버

2026년 설 연휴 극장가를 달군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이후 20일 만에 600만 관객을 넘기며 단종 서사를 다시 대중의 중심으로 불러냈다. 단종은 권문의 외손(부정공파이며, 당당한 적장자 왕이었다. 그의 부활은 곧 민중의 가슴속을 569년을 살아남아 이 땅에 더러운 전통을 이어온 노른 수구들과 지금까지 존중하고 있는 민족 반역, 민주 반란 세력의 심장부에 날리는 통렬한 경고인 것이다. 역사는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다.

작품은 청령포에 유배된 어린 임금 단종의 마지막 시간을 감정의 결을 따라 섬세하게 복원한다. 왕의 죽음을 비극적 사건으로 소비하는 대신, 한 인간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끝내 지키고자 했던 명분을 조용히 비춘다.

영화가 힘을 얻는 지점은 대비에 있다. 세종 시대의 ‘여민락(輿民樂)’이라는 이상, 곧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는 정치 철학과, 그로부터 불교 한 세대 뒤 벌어진 권력 찬탈의 현실을 병치한다. 성군의 이상이 남긴 제도와 문화는 여전히 찬란한데, 왕권의 정통성은 갈길 앞에서 무너진다. 이 아이러니는 관객으로 하여금 조선 정치사의 구조를 되묻게 한다.

1453년 소위 계유정난(癸酉靖難), 실체는 계유정변(癸酉政變), 이후 권력의 축은 급격히 기울었고, 1455년 어린 왕은 숙부에게 선위했지만, 실체는 찬탈(篡奪)이었다. 즉위한 이는 세조였다. 영화는 이 역사적 전환을 단지 ‘왕위 교체’가 아니라, 관계의 붕괴로 그린다. 왕과 신하, 왕과 백성, 그리고 왕과 가족 사이의 신뢰가 어떻게 균열되었는지를 인간의

표정과 침묵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작품은 질문을 던진다. 왕의 몰락 뒤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폐위된 군주의 비극은 기록에 남는다. 그러나 그 곁에 있던 이들, 왕비와 후궁, 외가와 친족?의 삶은 대개 각주로 밀려난다. 영화의 여인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레 주변 인물들의 시간을 상상하게 된다. 청령포의 강바람은 왕 한 사람만을 스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질문의 중심에 한 여인이 있다.

왕비가 아닌 후궁, 권력의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서 역사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 속의 권씨, 곧 권중비(權仲非)이다.

그녀의 이름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단종의 폐위와 사사, 가문의 몰락과 연좌의 굴레, 그리고 반세기를 넘는 긴 생존의 시간은 조선 정치사의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영화가 단종의 눈빛을 통해 ‘폐한 정’을 묻는다면, 권중비의 삶은 그 정의 이후의 시간을 증언한다. 왕은 역사로 남고, 그 곁의 여인은 세월로 남는다.

‘왕과 사는 남자’가 부활시킨 것은 단종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잊힌 이름들의 시간, 그 긴 침묵 또한 함께 되살아난 것이다.

그녀는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 잠시 빛났으나, 단종의 폐위와 함께 역사의 딸로 전락하였다. 영화가 단종의 인간적 고뇌를 조명했다면, 권중비의 삶은 그 이후의 시간을 증언한다. 왕의 비극이 끝난 자리에서 시작된 긴 생존의 역사, 그것이 바로 그녀의 삶이었다.

부친 권완의 몰락과 후대의 재평가



속의 권씨 권중비 그녀의 묘소는 확인된 바 없으나 진천(鎭川)에서 마지막을 보냈다는 것으로 보아 진천, 보은 인근에 묻혔을 것이다. 그녀가 언젠가는 건넌것을 농나라의 풍정이 이를 증언 하리라. 사진 진천군청

권완(權完)은 안동 권씨 추밀공파 18세 계통의 인물로, 조선 전기 문신이었다. 음보로 관직에 나아가 사정 등을 거쳐 행돈녕부판관에 이르렀다. 가문은 이미 왕실과 인연을 맺고 있었고, 딸 권중비가 단종의 후궁으로 간택되면서 정치적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그 영광은 길지 않았다.

1455년, 어린 임금 단종이 숙부에게 왕위를 선위하고, 수양대군이 즉위하여 세조가 되면서 정국은 급변하였다. 세조 즉위 이후 단종 복위를 도모하던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단행되었고, 1457년 권완 역시 그 연루자로 지목되었다.

그는 의금부에 하옥되었고, 끝내 능지처참을 당하였다. 가산은 적몰되었고, 가족은 연좌되었다. 역모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의도와 사정은 묻히고, 처벌은 가혹하게 집행되었다. 조선의 연좌제는 단정한 사람의 죄를 묻는 제도가 아니라, 가문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구조적 장치였다. 권완의 몰락은 곧 팔속의 권씨의 신분 추락으로 이어졌다. 왕의 후궁이었던 여인은 하루아침에 역적의 딸, 나아가 노비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역사는 한 시점에서 멈추지 않는다. 시대가 바뀌면 평가도 달라진다. 18세기에 들어 단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를 위해 충절을 지킨 인물들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다. 1791년(정조 15), 정조는 단종 충신들을 기리며 창절사에 배향하였다. 권완 역시 이때 절의를 인정받아 제향되었다. 생전에는 역적이었으나, 사후에는 충신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이는 조선 정치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정통성의 기준이 달라지면 충과 역의 경계도 달라진다. 권력의 승자가 규정했던 ‘죄’는, 시간이 흐르며 ‘의리’로 다시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의 처형으로 인해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 특히 딸 권중비가 감내해야 했던 긴 세월의 공핍과 침묵은 되돌릴 수 없었다는 점이다.

권완의 생애는 조선 전기 왕권 교체기의 폭력성과 후대 역사 인식의 가변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역사는 돌고 돈다. 그러나 그 회전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은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으로 남는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요철 기자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제3장 뿌리에 대하여

6. 한민족의 이상

금세기는 서구문명이 견인자 역할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저들의 사상과 종교는 현실을 변화시킬만한 능력과는 무관한 이념과 이상을 내세우다가 작금에 이르러는 총체적인 혼란 속에서 그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그 대안으로 동양사상에 눈을 돌리고 있다.

명상(冥想)이나 참선(參禪), 요가 등의 심도 있는 수련연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기존의 종교나 사상 등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서양의 종교나 사상이 현실에 무능하다는 말은 저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것은 잘못 흘러가는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말이다. 인간 변화에 무능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내포한 심각한 개인주의적 성향만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글로벌 경쟁의 시대가 중국에는 인류 공영이 아닌, 인류파괴이란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인구의 증가로 먹고 살아야만 하는 절박한 사실이 자연과과의 위협수위를 넘어서는 지가 오래되었고, 석유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은 대기층을 불안케 만들어 인간이 알지 못하는 기후의 변화는 이 지구를 자연의 원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 말았다. 아니 그것은 사상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정치의 문제만도 아니다. 이 지구의 운명이 그렇게 되어가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은 결국 인간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서 지구의 운 인류의 공존공생이라는 대명제(大命題) 앞에 자연의 진리에 순응하는 방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에 지각(知覺)이 있는 서양인(Westners)들이 동양의 기본사상인 유불선(儒佛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중국이나 일본, 인도 등지를 접해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그저 나라마다의 원시종교 및 사상만 접하는 아주 초보적인 변(變)죽만을 맛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불선(儒佛仙)은 한민족(韓民族)의 신교(神敎, 고조선 상고시대부터 우리민족이 국교로 받들

(皇帝內徑)의 뿌리이다.(삼성기, 규원사화, 태백일사, 포박자)

기독교는 수메르 문명에서 출발한다. 모세의 5경은 수메르법전(함부라비-모세오경)에서 유래했으며, 바벨탑은 수메르인들이 만들었던 지구뫾(Ziggurat)이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수메르문명의 중심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이주했다. 수메르와 우르는 우리민족인 한국(桓國)의 분국이다. 즉 기독교의 먼 옛날의 그 뿌리는 한국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유불선(儒佛仙)과 기독교(基督敎)에 관한 필자의 언급은 기존의 관념과 사상과 교육에 훈련된 사고로는 도저히 인정하기조차도 어려울 것이지만, 어찌되었던 세계의 문명은 분명 한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민족적 자긍심만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시세말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말 같이 인도에는 불교가 없고, 중국에는 유교나 도교가 없고 이스라엘에는 기독교가 없다.



(다음호에 계속)

증여세 절세 전략 ④

권오형

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세무사·추밀공파 35세·삼덕회계법인대표



질문4) 부모의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을 담보로 자녀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 등에 대한 설명

가. 부모의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을 담보로 자녀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나 예규를 찾아보면, 직접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단일 판례보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조항과 그 해석을 통해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는 다수의 유권해석 및 판례의 흐름이 존재한다.

나.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관련 해석

①법 조문(2015.12.15. 개정 시 신설된 제2항) :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⑦타인의 부동산(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는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동법 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의 계산 등) 제5항: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차입금액 × 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 실제로 지급한 이자

이 조항들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④담보 제공 자체는 증여가 아니다: 부모가 자녀의 대출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④담보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증여 대상: 다만, 그 담보 제공으로 인해 자녀가 얻는 경제적 이익(예: 담보가 없었다면 대출이 어려웠거나,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했을 경우의 이자 차액 등)이 있다면 그 이익은 증여로 본다.

④과세 기준금액: 이러한 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련 판례(대법원 2011두15570 판결 등)

검세 결과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두15570, 2013. 3. 28. 선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지〉 甲이 부(父)인 乙로부터 정기에금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사실상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甲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의 정기에금채권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볼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인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와 달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례의 핵심 내용 해석〉

①이 판례는 과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에서 금전 무상대출에 관한 조항(제41조의4)을 담보 제공에 유추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사례이다. 즉, 담보 제공은 직접적인 금전 대출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②대신, ‘기타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구 상속세법 제42조(현행 제42조는 내용이 다름)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통상적인 시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③이러한 판례의 흐름은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부동산 담보 이용 이익의 증여)이 신설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 신설 조항은 과거에 ‘기타 이익의 증여’로 포괄적으로 판단하던 것을 명확히 규정하여, 담보 제공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1천만원의 비과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결론〉

①부모의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을 담보로 자녀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 제공 자체는 증여가 아니다.

②그러나 담보 제공으로 인해 자녀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27조에 따라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③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담보 제공 자체는 증여가 아니며, 담보 제공으로 인한 이익이 세법상 비과세 기준(연 1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위에 언급된 법조문, 시행령, 그리고 관련 판례의 흐름이 이러한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다음호에 계속)

서울지역 종친회 새해 웃놀이 대회



흑한의 추위 영화 14도의 한파인데도 멀리는 인천, 경기도 의정부 등 각지에서 회원들이 속속들이 모여 11시에 시조소(始祖所) 망배(望拜) 후 간단한 회의 진행을 마쳤다.

점심식사는 새해인 만큼 만두와 떡국으로 약속을 겸하여 식사하고, 4개 팀으로 나눠 도, 개, 갈, 숲, 모, 뱀구도를 던지면서 니편, 내편 서로 우겨가면서 화

기에애하게 웃놀이를 했다.

2부에는 술자리를 마련하여 이진 편은 기빠서 한 잔 진 편은 서러워서 한잔 일배 일배 부일배로 분위기를 돋우었다. 주최측은 선물로 김과 양말을 나누어 주고, 다음 3월 행사는 권을 도원수 행사대접체에 참배하기로 하고 오후 5시경 헤어졌다.

권영복 서울지역종친회 회장